

북한자료를 통해 본 북한민법 연구의 특징*

-1997-2018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를 중심으로-

Study on North Korean Civil Law Reflected in North Korean Data

-Based on the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History, Law-

문 흥 안**

Moon, Heung-Ahn

조 근 형***

Jo, Geun-Hyoung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시사점 |
| II.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변천 | V. 나가며 |
| III. 김일성종합대학학보를 통해 본
민법연구 | |

이 논문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발간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학)에 게재된 민사법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북한에서의 민사법률 연구의 큰 흐름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논문분석에 앞서 II.에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발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김일성

<https://doi.org/10.35148/ilsilr.2021..48.83>

투고일: 2020. 12. 31. / 심사의뢰일: 2021. 2. 4. / 게재확정일: 2021. 2. 15.

* 이 논문은 2018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2018

** 주저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Lead Author, Professor,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 교신저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술원, 법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Specialis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종합대학과 법률대학에서의 법학교육 및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에서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중 민사법관련 83편의 논문을 남한민법 의 체계에 따라 북한민법 학자들의 논문을 연도별, 분야별, 발표자별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검토하였다. IV.에서는 II.와 III.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있어서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V.에서는 이상의 연구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

북한에서 22년 동안 발표된 북한민법 논문을 검토한 결과, 북한 민법연구에 있어서 논문 형식과 그 내용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16년 이후 해가 갈수록 논문의 분량이나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수준도 높아지며, 외국 민사법에 대한 소개도 많아지고 있다. 또 논문이 정치적 선전도구로부터 법리적 접근을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민법논문은 법해설 정도 수준의 논문이 많아 남한 수준의 학술적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논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2016년부터 논문에 실마리어(주제어)를 첨부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한다거나 그에 따른 각주, 초록 등은 앞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도 외국 민사법에 대한 연구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발표가 늘어나는 것은 논문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실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주제어]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북한민법, 북한민법 연구논문,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I. 들어가며

남한과 북한은 체제를 달리하지만 개인의 일상생활은, 출생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의식주에 필요한 경제생활과 대다수 개인들이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과 사망한 이후 남겨진 재산의 귀속 등에 대하여는 유사점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은 분단된 이후 72여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남한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식량대기근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유입으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실상의 일부가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민법의 연구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을 이해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북한도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이니만큼 이들에게 적용될 북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이 법조문을 통하여 북한사회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에 대한 인식이 남한과 같지 않은 북한에서 남한에서의 법률연구와 같은 연구방법은 북한의 허상만 보게 될 위험이 크다. 북한에서 간행된 『법학사전』에 의하면,

법은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생산관계와 사회질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 공포하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의 준수가 담보되는 행위준칙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¹⁾ 북한에서 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법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주권의 법으로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진다.²⁾ 그 결과 북한법은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법학은 국가 및 법률제도들과 그에 관한 사상견해들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부문임을³⁾ 강조한다. 이러한 법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남한의 법률과는 그 태생부터가 다르다.

결국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법이 지니고 있는 본질과 그 내용적 특성을 밝히고, 그 기초위에서 북한법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⁴⁾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와 문헌의 부족은 북한법 연구에 있어서 한계이다. 부족하나마 북한의 공식기관에서 공식 출판된 문헌 중의 일부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식간행물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⁵⁾

북한에서 법학이라는 학문이 사회과학의 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철학, 역사학, 경제학 등과 더불어 김일성종합대학 출범부터이다.⁶⁾ 김일성대학은 1956년부터 법학이 포함된 전문학술지로 [김일성종합대학학보]를 현재까지 간행해 오고 있다.⁷⁾ 이 논문에서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게재된 민사법관련 83편의 논문을 통해 북한 민법학자들의 연구동향을 통하여 북한에서의 민사법률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침 이 시기는 북한에서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식량부족에 따른 식량배급시스템의 붕괴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시스템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고, 2011년 김정일 사망과 이에 따른 김정은시대의 도래 등 북한 최고 권력의 연이은 승계가 있었다. 그에 따라 북한주민

-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276쪽.
 - 2)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제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142쪽.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285쪽.
 - 4) 장명봉, “북한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법연구』 (제5호), 북한법연구회, 2002, 296쪽.
 - 5) 양문수,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연구(제12권 제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7쪽.
 - 6) 김동한, 북한의 법학연구 연구동향 및 특성, 북한연구학회보(제10권 제2호), 2006, 58쪽, 이렇게 북한에 대학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법학부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법과 법학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인식하였다는 반증이라고 한다.
 - 7) 김동한, 북한의 남한 법 제도 및 국내정치 연구, 북한연구학회보(제14권 제1호), 2010, 32쪽에 의하면 법학과 관련된 전문학술지로는 이 외에도 [정치법률연구], [사회과학], [법학연구], [법학논문집] 등이 있다.

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여, 북한학자들의 논문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은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남북통합시대에 남북한의 주민들이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만큼은 혼란을 줄이며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민법 논문의 분석에 있어서는 편의상 남한민법의 체계에 따라 진행하였고, 문헌 소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연구는 문헌분석에 앞서 II.에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발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법률대학에서의 법학 교육 및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발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에서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⁸⁾ 중 민사법관련 83편의 논문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V.에서는 II.와 III.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있어서의 시사점을 알아본다. 마지막 V.에서는 이상의 연구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

II.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변천

1. 김일성종합대학교와 법학교육

1.1 김일성종합대학교의 변천

김일성은 1945년 11월 3일 “종합대학을 창설한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통하여 종합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⁹⁾ 이러한 바탕 위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1946. 5. 25)에 의거하여 1946년 5월 29일 <종합대학 창립준비위원회 조직에 관한 건>의 발표를 계기로 종합대학의 창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¹⁰⁾ 당시 소련군정도

8)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중 1999년도 간행본은 찾을 수 없어 실제의 연구는 21년간의 발표 논문이다. 또 2018년 이후의 자료는 코로나19사태로 자료 접근에 제한을 받아 이번 연구에서는 부득이 포함시킬 수 없었음을 밝힌다.

9) 김창호, 『조선교육사』(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176쪽에 의하면, 그는 종합대학을 창립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할 간부들을 동시에 양성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10) 정경모·최달곤 편, 『북한법령집』(제4권), 대륙연구소, 1990, 68쪽, 임시인민위원회,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

“국립종합대학의 창설 및 대학 산하의 학문 연구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동년 7월 8일에는 종합대학에 관한 구체적인 설립안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¹¹⁾ 이러한 준비를 거쳐 1946년 9월 15일 개교하였고, 10월 1일 창립을 선포하였다.¹²⁾ 창립 당시 대학은 문학부, 법학부, 이학부, 공학부, 농학부, 의학부, 철도공학부 등 7개 학부 24개 학과, 30개 학급에 68명의 교원과 1,500명의 학생으로 출발하였다.¹³⁾ 이 중 사회과학분야는 문학부(사학과, 문학과, 교육학과 포함)와 법학부(법학과, 경제학과)가 설치되었다.¹⁴⁾ 북한의 모든 대학은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점진적으로 단과대학이 설립되고 있다. 즉, 2001년 이 대학의 편제 개편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에 법률대학과 문과대학, 그리고 컴퓨터 대학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16개 학부에서 3개 단과대학, 13개 학부, 34개 학과, 200여 강좌로 편성되었다고 한다.¹⁵⁾ 또 2019년 10월에는 일부 학부제로 개편하여, 사회과학 부문은 4~5년제, 대다수의 자연과학 부문은 5년제, 정보과학부의 경우 4~5년제이고, 프로그램학과의 경우는 2년제라고 한다.¹⁶⁾ 각 학부들에는 5~6년제의 본과·박사원칙속반¹⁷⁾도 있다고 한다.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에는 12,000여 명의 재학생들과 6,000여명의 교직원들이 있다. 교직원 중 교육과 연구사업 담당 교수 및 연구사가 2,500여명 있는데 1,000여명 이상의 교원은 준박사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여교수는 총 교원 수의 20%를 차지한다.¹⁸⁾

김일성종합대학을 포함하여 북한의 대학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남한과 같이 일률적으로 학사라는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인문계와 사회·과학계 대학을 졸

회 조직에 관한 건” 참조.

- 11) 김근배,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과학기술계 학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제22권 제2호), 2000, 195쪽.
- 12) 김일성종합대학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신호숙, “해방 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제2권 제2호), 1998; 김기석,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 교육이론(제10권 제1호), 1996; 김근배,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과학기술계 학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제22권 제2호), 2000; 김동한, 북한의 법학연구 연구동향 및 특성, 북한연구학회보(제10권 제2호) 등이 있다.
- 1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027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0. 12. 25.
- 14) 전미영, 북한의 철학연구 동향-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 206쪽.
- 15) 조선신보, 2001. 2. 5.; 민주조선, 2001. 2. 13. 기사
- 16) <https://namu.wiki/w/%EA%B9%80%EC%9D%BC%EC%84%B1%EC%A2%85%ED%95%A9%EB%8C%80%ED%95%99> 검색일: 2020. 12. 12.
- 17) 남한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18)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D%BC%EC%84%B1%EC%A2%85%ED%95%A9%EB%8C%80%ED%95%99> (2020. 12. 26 방문)

업한 사람은 전문가라는 칭호를 받고, 자연계 대학 또는 기술 분야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기사라는 자격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교사 자격증이 수여되며 공장대학 또는 농장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준기사 자격증을 받는다.¹⁹⁾ 그러나 김일성종합대학에 한하여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졸업생 모두에게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²⁰⁾

북한의 학위는 학사, 박사, 원사로 남한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제와는 다르다. 이 가운데 원사는 별도의 논문을 쓰지 않고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으로서 오랜 기간 교수 또는 연구사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일반적인 학위제도로는 학사와 박사가 있는 셈이다.²¹⁾ 학사와 박사학위는 중앙인민위원회 학위학칙수여위원회의 이름으로, 대학교의 연구원과 박사원에서 수여하며, 과학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1.2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1946년 10월 1일 개교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의 법학과는 법학부(법학과 경제학과)에 속하였으며, 모집인원은 전체 1,190명 중 150명이었다.²²⁾ 1년 후의 개편 때는 경제법학부(법학과, 계획경제학과, 재정학과)에 속하였다가 1949년 10월 1일 개편 때 법학부 법학과(국가와법리론강좌, 형법강좌, 민법강좌)로 독립되었다. 1951. 11. 20 전시 하에서 학부와 강좌구성은 법학부(국가와 법의 리론 강좌, 민법강좌, 형법강좌)로 되어 있었고, 1953~1954학년 초기에 법학부에 4개의 강좌(국가와 법 리론 및 국가법 강좌, 민법 강좌, 형법 강좌, 국제법 강좌)가 중심이 되었다.²³⁾

법률대학의 신설은 국내법보다 국제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 자본주의 시장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²⁴⁾ 사실 법학부는 개교 당시부터 개설되어 있었지만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김일성종합대학의 구조조정 때마다 역사 학부나 철학부 등에 통합 혹은 분리되는 등 그 정체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한 학문분야였

19)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12&no=321> 검색일: 2020. 12. 14.

20) 최선영, 북한의교육제도: 변천사와부문별특징, 통일경제 2001. 3·4, 77쪽.

21)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12&no=321> 검색일: 2020. 12. 14.

22)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 1956, 18-19쪽.

23) 김동한, 북한의 법학연구 연구동향 및 특성, 북한연구학회보(제10권 제2호), 2006, 65쪽.

24) 최선영, 북한의 교육제도: 변천사와 부문별 특징, 통일경제, 2001, 3·4, 75쪽.

다. 1980년대 동유럽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당시 김정일 총비서가 구시대의 관습과 사고 방식을 털어버리고 변혁을 주창하면서 법률대학으로 개편되었다. 국내법보다는 국제법 전문가 양성에 주력함으로써 세계흐름을 따라가려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²⁵⁾

법률대학에는 법학과, 국가관리법학과, 국가법학과 등의 학과가 있다.²⁶⁾ 법학과와 개설 과목은 사회주의헌법, 법제정학, 노동법학, 민법학, 증권법, 국제법, 국제조약법, 국제민사소송법, 외국상법, 외국민법, 국제무역법학, 국제중재법학, 국제사법학, 국제정치학, 국제법사, 범죄수사학 등이 개설되었다고 한다.²⁷⁾

법률대학의 입학 정원은 매년 100~200명 정도이며, 교육 과정은 1, 2학년 때에는 이론 과정, 3~5학년엔 법조 현장과 관련된 실무 실습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실용적 법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며, 모의법정도 여러 교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사법시스템에는 신규로 법조계에 진입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실무 실습과정이나 연수과정이 없다.²⁸⁾

법률대학을 졸업하면 재판소의 법관이나 검찰소의 검사로 직장 배치를 받을 수 있다.²⁹⁾ 북한 내에서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아서 성적이 매우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북한에서 재판이나 검찰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북한 내 학생들에게도 법학 계열은 크게 인기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에서 법조계는 의학계처럼 전문적인 기술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³⁰⁾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내에서 비인기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는 1956년 6월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다. 김일성종합

25) 최선영, 북한의 교육제도:변천사와 부문별 특징, 통일경제, 2001, 3·4, 75-76쪽.

26)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D%BC%EC%84%B1%EC%A2%85%ED%95%A9%EB%8C%80%ED%95%99> (2020. 12. 14. 방문) 조선신보, 2001. 2. 5.

27)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12&no=321> 검색일: 2020. 12. 14.

28)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12&no=321> 검색일: 2020. 12. 14.

29) 평양 이외의 지방에도 단과법률(학)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대학을 졸업해도 사법 분야에 직장 배치를 받을 수 있다.

30)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사회체계가 무너지고 적자생존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개인들간 사법체계에 의한 해결보다는 권력과 힘에 의존한다고 한다. 입법시스템 역시 내각 위에 있는 노동당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므로, 학문으로서의 법률 수요도 극히 적다.

대학학보는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의 편제 변화가 있었다. 1956년 6월~1959년 1월에는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논문이 한 논문집에 통합되어 있었고, 1959년 2호부터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 분리되어 간행되었다. 1964년 4월호부터는 남조선연구, 외국어문, 경제학, 역사철학, 지리학 등으로 세분화, 1982년 3호부터 다시 사회과학 통합본으로 간행하였다. 1991년부터는 철학, 경제학, 역사법학, 어문학 등 4개분야로 분리하여 1993년까지 통권에서 순차적으로 발간하여오다가, 1994년부터는 철학, 역사·법학, 경제학, 어문학 등 4개 분야별로 권, 호수를 지정하여 발간해오고 있다.³¹⁾ 1998년부터는 (철학·경제학), (어문학), (역사·법학)으로 세분하였는데, 2019년에는 철학·경제학 및 역사·법학을 분리하여 철학, 경제학, 역사학, 법률학, 어문학의 5개 분야로 편제하고 있다.

[표-1]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시기별 편제 변화³²⁾

시 기	학문분야별 간행 편제	비 고
1956. 6~1959. 1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통합본	법학논문 1편
1959.2호~1962.2호	사회과학분야 분리	법학논문 1편
1962.3호~1964.3호	미확인	
1964. 4~1964. 11	남조선연구/ 외국어문/ 경제학/ 역사철학/ 지리학	
1964.12~1982. 2	미확인	
1982.3호~1984.1호	사회과학 통합본	
1984.2호~1990.	미확인	
1991.1호~1993.	철학/ 역사· 법학 / 경제학/ 어문학	4개 부분으로 발행
1994.~1997.	철학/ 역사· 법학 / 경제학/ 어문학	각 분야별로 각각 권, 호 지정하여 발행
1998.~2018.	철학·경제학/ 역사· 법학 / 어문학	3개 부분으로 변경
2019.~현재	철학/ 경제학/ 역사학/ 법률학 / 어문학	철학·경제학과 역사·법학을 분리하여 5개 부분으로 변경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는 북한의 사회과학 부문의 우수한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고 한다.³³⁾ 그런 만큼 민사법 관련 논문들도 북한 입장에서는 우수한 논문이라고 추정해

31) 김동한, 북한의 법학연구 연구동향 및 특성, 북한연구학회보(제10권 제2호), 2006, 61-62쪽.

32) 전미영, 북한의 철학연구 동향, 203쪽 (표 1) 재인용; 그러나, 김동한, 북한의 법학연구 연구동향 및 특성, 61-62쪽에 의하면 초창기의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전미영의 자료를 재인용하되, 1998년 이후 편제 분석을 더하였다. 또한 본 표는 사회과학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33)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4.jsp?menuIdx=769&category=370&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articlesId=1523931> 검색일: 2020. 12. 15.

볼 수 있겠다. 김정은은 2016년 9월 27일 창립 70주년을 맞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수한 학술논문들을 집필하여 권위 있는 국제토론회와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하도록 하며 ‘김일성종합대학학보’를 국가적인 전문 학술잡지로 정하고 세계적인 학술잡지로 발전시키”³⁴⁾도록 주문했다고 한다. 또 종합대학학보를 비롯한 도서, 교재, 참고서들을 품위있게 만들어 대학과 국내에서 널리 리용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도 내보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⁵⁾ 이러한 영향인 듯,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률)’는 그 형식에 있어서 2017년 7월(제63권 제3호)부터 변화가 있었다. 학보 표지배경에 대학건물 사진이 들어가고 영문표기(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History, Law Vol.63 No 3)도 추가 되었다. 또 논문에는 매 논문마다 주제어(핵심어)에 해당하는 ‘실마리어’를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고 머리말도 달았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형식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II. 김일성종합대학학보를 통해 본 민법연구

1. 일반적 연구 환경

김일성종합대학을 포함한 북한의 대학교 교원의 기본 임무는 강의이다. 강의는 연 중 1,000시간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강의가 있기 전에 강의안 작성을 6개월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³⁶⁾ 교원은 자신의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실력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학생의 성적이 교원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교원들은 매년 연구 및 집필활동에 1,000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구 활동은 국가과제, 대학, 과학부의 연구과제 그리고 교원 자신에 의한 연구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제시되는 국가과제 연구는 학사와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교원만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의 특별한 연구과제는 모든 교원이 참가할 수 있다. 집필 활동에는 교과서, 강의 참고서, 학술잡지 또는 신문 등에 기고하는 활동을 모두

34) <http://www.leaders.kr/news/articleView.html?idxno=40089> 검색일: 2020. 12. 16.

35) 일간리더스경제신문(<http://www.leaders.kr>) 2016. 9. 30. 검색일: 2020. 11. 8.

36)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12&no=321> 검색일: 2020. 12. 14.

포함하며 모든 교원은 자기 강의과목에 대하여 참고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또 교원은 정치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정치 학습활동은 당 정책에 따른 정치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것과 생활총화, 사상투쟁회의, 당회의에 참석하여 비판과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³⁷⁾

김일성종합대학에 유학했던 외국인의 눈으로 본³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은 그들도 지식인답게 외국학자들과의 학술교류나 협력에 관심이 있었으며, 외국의 연구활동과 외부세계 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 최고대학의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쓸 수 없고, 외국서적을 접할 기회도 별로 없는 듯 보였다고 한다.

2. 연도별 민사법 연구 추이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은 1995년과 1996년 잇따른 자연재해로 식량생산마저 크게 줄면서 각자 도생의 무정부 상태에 있었다. 이어 등장한 김정일도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이었던 식량과 생필품 배급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북한당국의 통제력은 약화되었고,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농민시장³⁹⁾을 통하여 부족한 물자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⁴⁰⁾

1997년 이후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법률){이하 ‘학보’라 한다}는 제한적이지만 시장경제 체제로 진입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시대적 배경 하에 간행된 학술연구 간행물이다. 매 ‘학보’에는 역사관련 논문이 게재되고, 이후 법학논문이 게재된다. 법학 논문은 일반적으로 헌법논문, 형법논문, 민법논문의 순으로 편집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18년까지⁴¹⁾ 21년간(1999년 게재된 논문은 찾을 수 없었음) 발표된 민법

37)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12&no=321> 검색일: 2020. 12. 14.

38) 알렉 시글리, “김일성대학 류학생 교실의 일화들”, 북한 제580호, 북한연구소, 2020, 79쪽, 이 유학생은 조선어 문학 박사과정 유학생이었고 자신들의 기숙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연변대학 교수들과의 면담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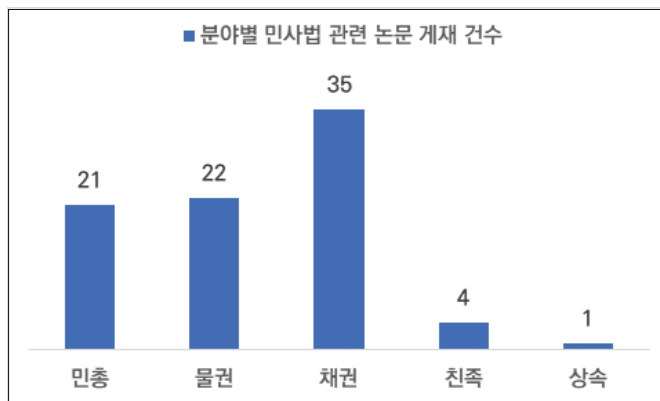
39) 북한의 시장은 농촌시장 혹은 농민시장 등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쳤다. 즉, 1957년 북한당국이 전면 배급제를 통하여 식량과 일상생활용품을 배급하면서 주민들의 농민시장 이용은 극히 저조하였으며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배급량의 부족, 군수산업 집중 육성 등으로 주민들의 소비생활이 어렵게 되자, 개인의 부업생산과 판매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는 10일장 형태로 열리던 농민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변모되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있었다.

40) 자세한 것은, 문홍안, “북한살림집법 관련 법제를 통해 본 북한 부동산시장의 변화”, 북한법연구(제18호), 127쪽 이하 참조.

41) 당초의 목표는 2019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년 초 유입된 코로나19사태로 도서관

논문은 총 83편이다. 다만 북한에서 부동산은 국가소유이므로 민법적인 성격보다는 행정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여기에서는 남한에서의 분류방식에 따라 민법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또 부동산 관련 논문은 ‘학보’(철학,경제)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2018년도 ‘학보’(철학,경제)편⁴²⁾에 게재된 2편의 부동산 관련 논문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보’의 민사법 관련 논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민법총칙 분야가 21건, 물권 분야가 22건, 채권 분야가 35건, 친족 분야가 4건, 상속 분야가 1건으로, 채권 분야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림-1> 1997년~2018년 분야별 민사법 관련 논문 게재 건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법에 대한 논문발표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평균 1.7편의 발표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2009년~2016년까지는 매년 평균 4.9편으로 비교적 활발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매년 평균 10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활발한 연구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2016년 9월 27일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주년을 맞아 우수한 학술논문들을 집필하고, ‘김일성종합대학학보’를 “국가적인 전문 학술잡지로 발전시키”⁴³⁾도록 주문한 영향도 컸으리라 생각된다. 최근에는 연간 4회 발간되는 ‘학보’ 각각의 호수에 2.5편의 민사법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등 관공서에 보관된 자료접근이 어려워 2018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42) 부동산에 관련된 논문은 ‘학보(철학,경제)’에도 여러 편 게재되어 있었지만, 논문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코로나 여파로 자료열람이 불가능하여 논자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 2편만을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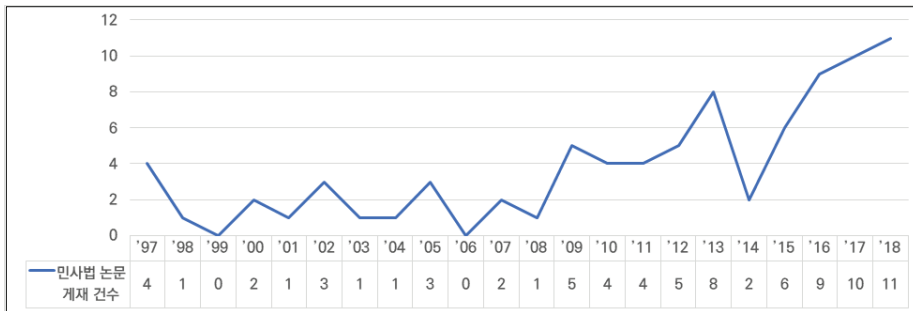
43) <http://www.leaders.kr/news/articleView.html?idxno=40089> 검색일: 2020. 12. 16.

[표-2] 연도별 민사법 분야별 연구 추이

연도	민총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소계	비고
1997	2	1	1			4	1996년 사회주의 재산관리법 제정
1998	1					1	헌법개정, 퇴발경리 규정 신설
1999						미확인	토지법 개정
2000	1	1				2	
2001			1			1	
2002	1		2			3	상속법 제정, 폐기발에 토지사용료부과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		1				1	
2004		1				1	협동조합농지 개인경작제 도입, 전당포관리 운영규정 제정
2005	1		2			3	북남경제협력법 제정
2006						0	부동산사용료 제정·징수 김정일-국가주택 매매 업금
2007				1	1	2	
2008			1			1	
2009		1	3	1		5	살림집법 제정, 부동산관리법 제정 화폐개혁
2010			4			4	
2011		1	2	1		4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김정일 사망/ 김정은 체제
2012	1	1	3			5	헌법 개정-대외무역
2013	2	2	4			8	장성택 처형
2014	1		1			2	
2015	2	2	2			6	
2016	3	1	5			9	
2017	2	4	3	1		10	
2018	4	6	1			11	
소계	21	22	35	4	1	83	

또한 이하 <그림-2>와 같이 연도별 민사법 관련 논문 게재 건수의 추이를 보면 2008년 이후 논문발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연도별 민사법 관련 논문 게재 건수의 추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발표논문의 주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2018년도 발표 논문 중 5편의 논문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고, 2018년도 발표된 논문의 45%에 달한다. 북한에서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주민들의 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북한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등에 있어서 어떤 병리적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짐작할 수 있겠다.⁴⁴⁾

[표-3] 2016년~2018년 발표논문

년도	분야	논문제목	발표자
2018 (11)	민총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성에 대한 리해	최덕성
		부동산으로서의 토지의 특성	김용설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	리 성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한 몇가지 리론실천적문제	한철룡
	물권	주체의 토지법전을 마련하시어 사회주의국토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박학수
		토지의 정확한 등록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용설
		민법에서 점유의 보호	리학철
		점유의 법적성질	한철룡
		국가소유부동산리용권에 대한 리해	윤종철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의 제한규제에 대한 분석	조 광
	채권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확정	백영훈
2017 (10)	민총	민사법률제도에 대한 부르조아경제분석법학의 견해 비판	최일복
		민법상 의사표시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리학철
	물권	각국 민법에서 규제한 점유보호	한철룡
		로마법에 규제된 소유권제도의 반동적성격과 그것이 자본주의물권법에 미친 영향	현용삼

44)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

년도	분야	논문제목	발표자
2017 (10)	물권	선의취득제도의 적용경우와 법적효과	한철룡
		소유권의 발생과 그 법적효력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최덕성
	채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불리행사유	최덕성
		보증채무분쟁해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윤종철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액의 확정에서 류의할 문제	백영훈
	가족	결혼과 가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과 공화국사회주의법	김명옥
2016 (9)	민총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리해	최덕성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학철
		공화국민법에 규제된 허위적인 행위와 그 법적효과	최주광
	물권	민사관계에서 선의취득의 성립조건과 그 법적효과에 대한 리해	리학철
	채권	채무자의 채무리행재산보존을 위한 채권자의 청구권문제	윤종철
		채권채무이전의 법적효력에 대한 리해	최덕성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리해	백영훈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백영훈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의 판단방법에 대한 리해	백영훈

* 이하 도표 () 안은 논문의 편수

3. 각 분야별 연구 주제

3.1 민법총칙 분야(21)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21년간 ‘학보’에 발표된 민법총칙 관련 논문은 83편 중 21편으로 전체 논문 중 약 25%에 달한다. 북한민법은 판덱텐시스템에 따라 남한의 민법총칙에 대응한 ‘일반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입법자들은 민법전의 체계구성문제가 단순한 편찬·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정치제도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만이 지배하고 있으며, 모든 생산과 건설 그리고 소비가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⁴⁵⁾ 북한이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의무이며 그것은 국가기관들의 지도 밑에 실현된다고 한다.

북한 민법총칙은 민법의 규제대상과 사명, 민법의 원칙, 민법의 효력 등의 규범들을 밝히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대부분 정책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관련되는 법률문헌도 극히 정치수사적인 것이 특징이다.⁴⁶⁾ 발표된 총론 부분에 대한 논문도 이리

45) 법무부, 『북한민법 주석』, 2014, 35쪽.

한 성격을 반영한 논문으로 보인다.

한편 법률행위 분야의 논문은 10편에 달하고 그 논제도 중복되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의 논문은 북한의 다른 학자가 예전에 발표한 논문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소개하며, 논문에서 북한민법 조문을 인용하는 등 논문으로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난 시기 학계에서는 민사법률행위의 형식과 관련하여 의사표시와 효력발생을 위한 형식적조건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취급해왔다. 그 결과(중략) 공증형식도 마치 의사표시의 형식처럼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⁴⁷⁾ 비판 하지만 그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학술논문으로서 보완하여야 할 점들이 있다.

[표-4] 민법총칙 분야의 논문

분야	논문주제	발표자	발표년도	학보
총론 (4)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성에 대한 이해	최덕성	2018년	법률
	민사법률제도에 대한 부르조아경제분석법학의 견해 비판	최일복	2017년	법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민법건설의 강력적지침	윤종철	2012년	법률
	민사법률관계의 사회정치적성격에 대한 문제	윤종철	1997년	법률
주체 (2)	소재불명자와 사망자인증제도	백영훈	2013년	법률
	민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공민의 지위에 대한 법적고찰	리현숙	2002년	법률
객체 (2)	부동산으로서의 토지의 특성	김웅설	2018년	경제
	민사법률관계대상으로서의 물건의 분류	백영훈	2013년	법률
법률행위 (10)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이해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	리성	2018년	법률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한 몇가지 이론실천적문제	한철룡	2018년	법률
	민법상 의사표시에 대한 이해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리학철	2017년	법률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이해	최덕성	2016년	법률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학철	2016년	법률
	공화국민법에 규제된 허위적인 행위와 그 법적효과	최주광	2016년	법률
	민사법률행위를 위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그에 따르는 법적효력	최덕성	2015년	법률
	민사법률행위의 분류	최덕성	2015년	법률
	민사법률행위의 분류	최덕성	2014년	법률
	민사법률사실의 분류	백영훈	2005년	법률
시효제도 (3)	민사시효의 중단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리학철	2000년	법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리학철	1998년	법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리학철	1997년	법률

46) 법무부, 위의 책, 39쪽.

47) 리성,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이해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률)(제64권 제4호), 2018, 135-136쪽.

다른 한편, 북한민법에서 시효제도는 북한민법전 제4편 제2장(제259조~제271조)에 규정되어 있어 남한과 다른 편제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일찍이 1956년 ‘시효에 관하여’라는 단행법령을 제정하였고, 1961년 ‘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여 1990년 민법전의 제정까지 시행하고 있었다. 북한은 기관·기업소·사회단체들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을 강화하며 공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⁴⁸⁾ 여기서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 법인들간의 민사관계에서 적용되는 시효제도라고 한다.⁴⁹⁾ 시효제도에 대한 논문은 1997~2000년 사이에 3편이 발표되고 더 이상의 발표가 없었다. 추측건대 1994년 김일성 사후 협동농장에서는 국가에 상납해야 할 식량을 숨기고, 식량수매도 진전이 없었으며 그나마 공출된 식량마저 수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⁵⁰⁾ 기관·기업소·사회단체들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보장하기⁵¹⁾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3.2 물권법 분야(22)

북한에서는 남한에서의 물권법을 ‘소유권제도’라 한다.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부정하고 소유주체에 따른 소유형태로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 등 3가지를 열거하는 사회주의 민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⁵²⁾ 이러한 북한 물권법은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중국 민법통칙⁵³⁾이나 중국 물권법⁵⁴⁾과는 달리 외형상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다.

48) 「민사법사전」,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안전부출판사: 평양, 1997, 239쪽.

49) 법무부, 『북한민법 주석』, 2014, 318쪽.

50) 좋은 벗들 엮음,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정토출판, 2000. 에 많은 증언이 있다.

51) 리학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률)(제43권 제1호), 1997, 53쪽.

52) 법무부, 『북한민법 주석』, 2014, 441쪽.

53) 사회주의민법이지만 1986년 4월 12일 제정되어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민법통칙은 정경분리론의 입장에 따라 경제적인 면에서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에 따른 법률상의 반영인 개인소유권의 확대(사영기업에 대한 개인소유권의 인정), 채권담보의 일종으로서의 저당권 및 유치권의 인정·전인민소유제기업의 경영권·농촌도급경자의 도급경영권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 종래 제한물권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지상권, 지역권, 가옥전권, 질권 등도 이론상 인정되어 북한 민법의 경우와는 달리 물권제도가 다양하였다(鄭立主編, 「民法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1, 112-116쪽).

54) 2007년 3월 6일 제정되어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를 명문으로 채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 부동산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토지의 사용권의 담보제공 등 처분권 확대, 토지도급경영권·건설용지사용권·주택기지사용권의 용익물권의 지위 인정, 저당권과 질권의 객체에 대한 범위확대 등을 통하여 중국 민법상 물권제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江平 <노정환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21년간 ‘학보’에 발표된 물권법 관련 논문은 83편 중 22편으로 전체 논문 중 약 26.5%에 달한다.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에 대한 외국입법례에 대한 소개가 이례적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소유제도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만을 허용하고, 사소유권이 부인되기 때문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에 대한 반작용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2011년 장철진의 “외국민법에 규제된 전당권에 대한 일반적리해”는, 2004년 3월 이후 전당포가 운영되고 있는⁵⁵⁾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민법 제40조가 ‘비법점유재산의 반환청구’에서 점유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은 점유권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북한에서 개인들이 토지 및 생산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점유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학보’에 발표된 점유에 관한 논문들은 물권법에 규정이 없는 점유제도에 대한 북한학자들의 점유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⁵⁶⁾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유제도에 대한 외국 입법례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다수의 논문발표가 점유제도에 대한 이론적 규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5년부터 시작된 식량부족으로 말미암은 대기근 시기, 북한 주민들은 소위 폐기밭이라는 산림 개간을 통해 식량을 자체 조달하였다. 북한 당국은 2002. 7.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하여 폐기밭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북한주민들의 극에 달한 불법적인 산지개간 및 토지이용에 대하여 2009년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여 이를 합법화하였다.⁵⁷⁾ 부동산관리법에 의한 부동산의 허가이용은 불법적인 산지개간 및 토지이용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북한의 전토지에 대한 것으로 토지의 철저한 관리와 부족한 재정 충당을 위하여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배타적 토지이용을 허가하는 것이었다. 2018년에 발표된 “주체의 토지법전을 마련하시여 사회주의국토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토지의 정확한 등록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등의 논문은 북한에서 토지의 허가 이용이 북한 사회주의 토지제도의

옮김>, 『중국민법』, 삼성경제연구소, 2007, 1426-1463쪽. 참조).

55) 북한은 2004년 3월, 재정성·산업성 공동지시 제18호로 전당포관리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56) 장병일, 북한법상 점유의 법적 성격, 통일과 법률(통권 제44호), 2020. 11. 70쪽. 이하에 북한의 점유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다.

57) 김상용, 북한의 사회주의 민사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통일 한국민법 구상의 기본방향,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21쪽.

중대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한다.⁵⁸⁾

[표-5] 물권법 분야의 논문

분야	논문주제	발표자	발표년도	학보
총론 (6)	주체의 토지법전을 마련하시어 사회주의국토건설의 위대한 앞길을 밝혀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박학수	2018년	법률
	토지의 정확한 등록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용설	2018년	경제
	물권의 본질과 특징, 사회계급적성격	한철룡	2013년	법률
	외국민법에 규제되어있는 물권의 대외적효력에 대한 리해	한철룡	2013년	법률
	자채행위를 통한 민사적권리의 보호	최덕성	2009년	법률
	외국민법에서 규제하고있는 물권의 대상에 대한 비교적고찰	리현숙	2004년	법률
점유 (6)	민법에서 점유의 보호	리학철	2018년	법률
	점유의 법적성질	한철룡	2018년	법률
	각국 민법에서 규제한 점유보호	한철룡	2017년	법률
	민법상점유의 특징	강정철	2015년	법률
	각국 민법이 규제하고있는 점유의 효력	한철룡	2015년	법률
	부르조아민법에 규제된 점유권제도의 반동성	리현숙	2000년	법률
소유권 (6)	로마법에 규제된 소유권제도의 반동적성격과 그것이 자본주의물권법에 미친 영향	현웅삼	2017년	법률
	선의취득제도의 적용경우와 법적효과	한철룡	2017년	법률
	소유권의 발생과 그 법적효력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최덕성	2017년	법률
	민사관계에서 선의취득의 성립조건과 그 법적효과에 대한 리해	리학철	2016년	법률
	외국민법에 규제되어있는 소유권의 원시취득에 대한 리해	한철룡	2012년	법률
	선의취득자보호관계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윤종철	1997년	법률
용익물권 (3)	국가소유부동산리용권에 대한 리해	윤종철	2018년	법률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의 제한규제에 대한 분석	조광	2018년	법률
	자본주의민법에서 규제하고있는 리용물권의 형태와 그 특징에 대한 법적고찰	리현숙	2003년	법률
담보물권 (1)	외국민법에 규제된 전당권에 대한 일반적리해	장철진	2011년	법률

3.3 채권법 분야(35)

북한에서는 남한에서의 채권법을 ‘채권채무제도’라 한다. 채권채무제도는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계약에 기초하는 계약, 제3장 계약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제4장 부당이득제도의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채권법은 거래관계를 규제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관계를 관리하고 그

58) 김상용, 위의 논문, 21쪽.

성과적 수행을 담보하며, 국민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래관계를 규제한다고 한다.⁵⁹⁾ 채권법이 거래관계를 규제하고, 거래관계에는 사회주의적 기관 사이에서만 형성되는 거래관계와 사회주의적 기관과 국민 및 개별국민 사이에서 형성되는 거래관계로 구분된다.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21년간 ‘학보’에 발표된 채권법 관련 논문은 83편 중 35편으로 전체 논문 중 약 42%로 가장 비중이 높다. 2010년대부터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을 다룬 논문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분쟁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반환제도는 불법행위제도와 함께 법정채권·채무관계의 중요한 발생기초의 하나가 된다. 불법행위제도가 언제나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부당이득반환은 이러한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우리민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다르지 않다.⁶⁰⁾

북한민법상 부당이득제도의 주된 목적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협동단체소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 제도가 민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한결 중요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활용된다고 한다.⁶¹⁾ 북한민법에서 부당이득반환제도는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의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소유재산도 보호하고자 하지만,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개인소유재산의 보호보다는 국가 및 협동단체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⁶²⁾

남한 채권법에서 법정채권으로 다루어지는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에서 민사책임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북한 채권법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손해보상법이라는 특별법 형식의 불법행위법을 마련하고 있다.⁶³⁾ 백영훈의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의 판단방법에 대한 리해” 등이 손해보상법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59) 「민법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평양), 1973, 191쪽; 최달곤, 「북한민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1998, 74쪽.

60) 박정원,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II)」, 한국법제연구원, 1997, 152쪽.

61) 최달곤, “북한민법의 제정과 그 변화-비교분석적 연구를 중심으로-”, 「북한법률행정논총」(제9집), 1992, 114쪽 참조.

62) 윤중철, 「민법학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178쪽.

63) 법무부, 『북한민법 주석』, 665쪽.

[표-6] 채권법 분야의 논문

분야	논문주제	발표자	발표년도	학보
채권·채무 일반 (5)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의 대등한 지위와 독자성에 대한 리해	윤종철	2011년	법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채권채무법의 존재형식과 그 변천에서의 특징	리현숙	2005년	법률
	민사채권채무관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조용봉	2002년	법률
	민사채권채무관계의 분류에 대한 연구	조용봉	2002년	법률
	민사채권채무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조용봉	2001년	법률
채무 불이행 (2)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불리행사유	최덕성	2017년	법률
	채무불리행태와 그 법적효과	리학철	2013년	법률
책임 재산보전, 다수당사자 (4)	보증채무분쟁해결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윤종철	2017년	법률
	채무자의 채무리행재산보존을 위한 채권자의 청구권문제	윤종철	2016년	법률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조건과 그 법적효과	리학철	2013년	법률
	공화국민사거래관계에서 채권담보의 형태별특성	최덕성	2009년	법률
채권양도, 채무인수 (3)	채권채무이전의 법적효력에 대한 리해	최덕성	2016년	법률
	채무이전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학철	2010년	법률
	채권양도에 대한 일반적 리해	리학철	2010년	법률
계약 (11)	계약위반책임의 본질과 특징	김절혁	2013년	법률
	법정의무를 위반한 일반계약의 부분무효에 대한 리해	김명철	2013년	법률
	계약관계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윤종철	2012년	법률
	계약해제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리해	서철웅	2012년	법률
	계약형식에 대한 법적고찰	리학철	2011년	법률
	계약상 승낙과 그 법적효력	박철남	2010년	법률
	무효한 계약과 그 법적효과	박현철	2010년	법률
	공화국계약법의 존재형식과 그 법적효력에 대한 고찰	리학철	2009년	법률
	계약리행항변권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학철	2009년	법률
	계약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는 법적관계에 대한 고찰	윤종철	2008년	법률
	민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조용봉	1997년	법률
부당이득, 불법행위 (10)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확정	백영훈	2018년	법률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액의 확정에서 류의할 문제	백영훈	2017년	법률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리해	백영훈	2016년	법률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백영훈	2016년	법률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의 판단방법에 대한 리해	백영훈	2016년	법률
	민법상불법침해행위의 분류	백영훈	2015년	법률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배제사유에 대한 리해	백영훈	2015년	법률
	재산침해로 발생한 손해량을 확정하는데서 고려할 문제	김세혁	2014년	법률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선학	2012년	법률
	불법침해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 가지 문제	윤종철	2005년	법률

3.4 친족법 분야(4)

남한의 민법전이 제4편에 친족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은 민법전에서 분리하여 ‘가족법’과 ‘상속법’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법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990년 제정된 북한가족법에는 상속과 관련하여 ‘제5장 상속’의 장에 8개 조문을 두고 있고, 이 상속에 관한 규정은 2002년 북한상속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북한가족법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는 등 정비되지 아니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⁶⁴⁾ 가족법은 1990년 제정 이후 1993년, 2004년, 2007년, 2009년 4차례 수정·보충 후 현재까지 그 규정에 변화가 없다.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21년간 ‘학보’에 발표된 친족법 관련 논문은 아래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편 중 4편에 불과하다. 북한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체제 선전의 도구로 북한의 결혼제도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결혼을 매매혼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체제 선전 도구역할을 하는 듯하다. 후견제도에 대한 백영훈의 “공화국가족법에 규제된 후견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는 남한의 후견제도 개정 이전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다.

[표-7] 친족법 분야의 논문

분야	논문주제	발표자	발표년도	학보
혼인 (3)	결혼과 가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과 공화국사회주의법	김명옥	2017년	법률
	공화국가족법에 규제된 결혼제도의 우월성	백영훈	2009년	법률
	노예소유자법의 결혼가족제도의 반동성	리성일	2007년	법률
후견 (1)	공화국가족법에 규제된 후견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백영훈	2011년	법률

3.5 상속법 분야(1)

남한의 민법전이 제5편에 상속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은 2002년 민법전에서 분리하여 ‘상속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상속을 민법전의 한 구성부분으로 파악해 오던 일반적인 사회주의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⁶⁵⁾ 그런데 ‘상속’에 관한 법규정은 1990년 제정된 가족법에는 8개 조문이었으나, 2002년 제정된 북한상속법은 4개장 57개 조문으로 확대되어 10여년 동안 북한사회에서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64) 문흥안, 북한가족법제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 통합의 방향, 법조(통권 제710호), 법조협회, 2015. 11. 8쪽.

65) 법무부, 『북한가족법 주석』, 2015, 508쪽.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⁶⁶⁾

그런데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21년간 ‘학보’에 발표된 상속법 관련 논문은 83편 중 1편뿐이다.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논문은 2002년 상속법이 제정된 이후 2007년 발표된 논문으로 그 내용은 상속법에 대한 해설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8] 상속법 분야의 논문

분야	논문주제	발표자	발표년도	학보
상속 (1)	공화국상속법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현숙	2007년	법률

4. 연구자별 논문의 특성

4.1 리학철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21년간 ‘학보’에 게재된 83편의 논문 중 14편을 발표하여 매년 0.7편 정도씩 발표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채권법 분야에 7편, 총칙분야에 5편을 발표하였으나, 최근에는 물권편에 2편을 발표하는 등, 북한 민법학자 중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민법총칙, 물권, 채권관계 등 민법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총칙과 물권법 분야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구자	분야	논문제목	발표년도	학보
리학철 (14)	총칙	민법상 의사표시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2017년	법률
		조건부적민사법률행위에 대한 일반적리해	2016년	법률
		민사시효의 중단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2000년	법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본질	1998년	법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1997년	법률
	물권	민법에서 점유의 보호	2018년	법률
		민사관계에서 선의취득의 성립조건과 그 법적효과에 대한 리해	2016년	법률
	채권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조건과 그 법적효과	2013년	법률
		채무불리행형태와 그 법적효과	2013년	법률
		계약형식에 대한 법적고찰	2011년	법률
		채무이전에 대한 일반적리해	2010년	법률
		채권양도에 대한 일반적 리해	2010년	법률
		공화국계약법의 존재형식과 그 법적효력에 대한 고찰	2009년	법률
		계약리행항변권에 대한 일반적리해	2009년	법률

66) 문흥안, 북한가족법제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 통합의 방향, 법조(통권 제710호), 법조협회, 2015. 11. 66쪽.

4.2 백영훈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21년간 ‘학보’에 게재된 83편의 논문 중 12편을 발표하였다. 백영훈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12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매년 0.85편 정도씩 발표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연구는 채권법 분야에 7편으로 그의 연구발표 중 과반에 해당하고, 총칙분야에 3편, 친족법 분야에 2편을 발표하였다. 최근의 연구는 주로 채권법 분야의 논문발표가 활발하다.

연구자	분야	논문제목	발표년도	학보
백영훈 (12)	총칙	민사법률관계대상으로서의 물건의 분류	2013년	법률
		소재불명자와 사망자인증제도	2013년	법률
		민사법률사실의 분류	2005년	법률
	채권	재산의 침해로 인한 손해량확정	2018년	법률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보상액의 확정에서 류의할 문제	2017년	법률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리해	2016년	법률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2016년	법률
		손해보상법상 인과관계의 판단방법에 대한 리해	2016년	법률
		민법상불법침해행위의 분류	2015년	법률
		민법상침해행위의 위법성배제사유에 대한 리해	2015년	법률
	친족	공화국가족법에 규제된 후견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2011년	법률
		공화국가족법에 규제된 결혼제도의 우월성	2009년	법률

4.3 최덕성

최덕성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이 기간 매년 1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민법학자로 추정된다. 그의 연구는 총칙에 6편, 채권에 3편으로 총칙 부문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민법의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구자	분야	논문제목	발표년도	학보
최덕성 (10)	총칙	민사적권리의 가치보존성에 대한 리해	2018년	법률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리해	2016년	법률

연구자	분야	논문제목	발표년도	학보
최덕성 (10)	총칙	민사법률행위를 위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그에 따르는 법적효력	2015년	법률
		민사법률행위의 분류	2015년	법률
		민사법률행위의 분류	2014년	법률
		자체행위를 통한 민사적권리의 보호	2009년	법률
	물권	소유권의 발생과 그 법적효력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017년	법률
	채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불리행사유	2017년	법률
		채권채무이전의 법적효력에 대한 리해	2016년	법률
		공화국민사거래관계에서 채권담보의 형태별특성	2009년	법률

4.4 윤종철

위 연구자는 1985년 김일성대학출판부에서 대학 자체교재 「민법학2」를 간행하였다. 그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민법총칙, 물권, 채권관계 등 민법 전반에 걸쳐 논문을 발표하고 있지만,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21년간 10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연구자로서의 연구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편의 논문을 발표를 제외하면 연구발표의 공백 기간이 매우 크다. 특히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2012년 발표된 민법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논문으로 지도자를 찬양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원로학자로 추정된다.

연구자	분야	논문제목법률	발표년도	학보
윤종철 (10)	총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민법건설의 강력적지침	2012년	법률
		민사법률관계의 사회정치적성격에 대한 문제	1997년	법률
	물권	국가소유부동산리용권에 대한 리해	2018년	법률
		선의취득자보호관계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1997년	법률
	채권	보증채무분쟁해결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2017년	법률
		채무자의 채무리행재산보존을 위한 채권자의 청구권문제	2016년	법률
		계약관계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2012년	법률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의 대등한 지위와 독자성에 대한 리해	2011년	법률
		계약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는 법적관계에 대한 고찰	2008년	법률
		불법침해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 가지 문제	2005년	법률

4.5 한철룡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21년간 ‘학보’에 게재된 83편의 논문 중 8편의 논문을 2012년

부터 2018년까지 발표하여, 매년 1.1편 정도의 연구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매년 2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북한 민법학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연구는 주로 물권법 분야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 명시적으로 점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현실에서 점유제도와 점유관련 외국법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민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외국에서의 유학경험 내지 비교법적 연구자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총칙분야에서도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구자	분야	논문제목	발표년도	학보
한철룡 (8)	총칙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이론실천적문제	2018년	법률
	물권	점유의 법적성질	2018년	법률
		각국 민법에서 규제한 점유보호	2017년	법률
		선의취득제도의 적용경우와 법적효과	2017년	법률
		각국 민법이 규제하고 있는 점유의 효력	2015년	법률
		물권의 본질과 특징, 사회계급적성격	2013년	법률
		외국민법에 규제되어있는 물권의 대외적효력에 대한 리해	2013년	법률
		외국민법에 규제되어있는 소유권의 원시취득에 대한 리해	2012년	법률

4.6 리현숙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21년간 ‘학보’에 게재된 83편의 논문 중 그의 발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편을 발표하였다. 연구는 총칙, 물권, 채권, 상속법에 걸쳐 있고, 민사법 연구자 중 유일하게 상속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8년 이후에 그의 연구실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북한 민법학자 중 초창기 연구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	분야	논문제목	발표년도	학보
리현숙 (6)	총칙	민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공민의 지위에 대한 법적고찰	2002년	법률
	물권	외국민법에서 규제하고있는 물권의 대상에 대한 비교적고찰	2004년	법률
		자본주의민법에서 규제하고있는 리용물권의 형태와 그 특징에 대한 법적고찰	2003년	법률
		부르조아민법에 규제된 점유권제도의 반동성	2000년	법률
	채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채권채무법의 존재형식과 그 변천에서의 특징	2005년	법률
	상속	공화국상속법에 대한 일반적리해	2007년	법률

4.7 조용봉

1997년 이래 2018년까지 21년간 ‘학보’에 게재된 83편의 논문 중 4편을 발표하였지만,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구실적만 보인다. 그는 민사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채권법 분야의 논문만을 발표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연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 초창기의 민사법 분야 연구자로 추정된다.

연구자	분야	논문제목	발표년도	학보
조용봉 (4)	채권	민사채권채무관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2002년	법률
		민사채권채무관계의 분류에 대한 연구	2002년	법률
		민사채권채무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001년	법률
		민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1997년	법률

4.8 기타

이 기간 동안 논문을 2편 이하 발표한 연구자들은 총 18명이다. 이 중 총칙 분야가 6건, 물권 분야가 4건, 채권 분야가 7건, 친족 분야가 2건으로 집계되었다. 채권 분야에 대한 논문발표는 2010년대 초중반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2010년대 중후반에는 총칙과 물권편의 논문발표가 비교적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김웅설이 2018년에만 부동산관련 논문 2편을 학보(철학,경제학)에 발표한 것이다.⁶⁷⁾ 향후 북한의 부동산 특히 토지문제를 연구하는 경우,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자	분야	논문제목	발표년도	학보
김웅설	총칙	부동산으로서의 토지의 특성	2018년	경제
리성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	2018년	법률
박학수		주체의 토지법전을 마련하여 사회주의국토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2018년	법률
조광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의 제한규제에 대한 분석	2018년	법률
최일복		민사법률제도에 대한 부르조아경제분석법학의 견해 비판	2017년	법률
최주광		공화국민법에 규제된 허위적인 행위와 그 법적효과	2016년	법률
강정철	물권	민법상점유의 특징	2015년	법률
김웅설		토지의 정확한 등록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2018년	경제

67)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를 물건, 즉 부동산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총칙편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부동산으로서의 토지의 특성’을 총칙 분야의 논문으로 보았다.

연구자	분야	논문제목	발표년도	학보
장철진	물권	외국민법에 규제된 전당권에 대한 일반적리해	2011년	법률
현웅삼		로마법에 규제된 소유권제도의 반동적성격과 그것이 자본주의물권법에 미친 영향	2017년	법률
김명철	채권	법정의무를 위반한 일반계약의 부분무효에 대한 리해	2013년	법률
김세혁		재산침해로 발생한 손해량을 확정하는데서 고려할 문제	2014년	법률
김철혁		계약위반책임의 본질과 특징	2013년	법률
리선학		부당리득에 대한 일반적리해	2012년	법률
박철남		계약상승낙과 그 법적효력	2010년	법률
박현철		무효한 계약과 그 법적효과	2010년	법률
서철웅		계약해제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리해	2012년	법률
김명옥	친족	결혼과 가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과 공화국사회주의법	2017년	법률
리성일		노예소유자법의 결혼가족제도의 반동성	2007년	법률

IV. 시사점

1. 북한 학술논문의 일반적 특성

북한에서 발간되는 거의 모든 논문의 머리말에는 김일성 혹은 김정일 혁명력사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여 “수령님, 장군님이 이렇게 교시하였으므로 이렇게 연구하였다.”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⁶⁸⁾ 등과 같이 이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려는 듯한 정치적 수사를 붙이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또 최근의 논문에서는 그 정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원론적인 설명이나 주장을 펼치고, 비슷하거나 반복적인 문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지루한 논문이 되는 일이 많다.⁶⁹⁾ 또 논문형식에 있어서 소제목이나 기승전결 등 문단 나눔이 없이 기술하여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논문의 내용도 논자의 주관적인 주장만 있지 이를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어 객관성이나 학술적인 가치의 입증이 어렵다. 종래 북한 민법논문이 기본개념이나 제도의 소개 수준이었지만⁷⁰⁾ 2016년 이후 해가 갈수록 논문의 분량이나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수준도 높아지며, 외국 민사법에 대한 소개도 많아지고 있다.

68) 한철룡,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리론실천적문제, 김일성종합학보(력사, 법률), 제64권 제1호, 2018, 99쪽.

69) 양문수,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연구(제12권 제2호), 2009. 8. 8쪽.

70) 권은민, 북한자료를 통해 본 북한의 조세제도 인식 수준과 현실, 북한법연구(제18호), 2018. 2, 347쪽.

하지만 현재의 북한논문에는 인용되는 문헌이 없어 각주나 참고문헌 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여기에 논문의 한글초록이나 영문초록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은 지나친 기대로 보인다.

2. 정치적 선전도구로부터 법리적 접근으로의 노력

북한의 문헌 자료는 기본적으로 조선노동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수단이기⁷¹⁾ 때문에 학술적 의미 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에 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실린 논문은 단순히 학문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⁷²⁾ 김정은 정권의 정책의 방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민사법 논문이라 하여도 이러한 기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³⁾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민사관련 논문들이 선전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다. 어느 체제에서나 학자들은 민사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⁷⁴⁾ 예컨대 무효인 법률행위와 선의취득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텔레비존을 친구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친구가 텔레비존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생활규범을 지키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거래의 활성화나 거래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므로 거래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등과 같다.⁷⁵⁾ 최근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 결혼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논문에서⁷⁶⁾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간섭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자원적 의사와는 무관계하게 흥정되거나 물질적 타산에 의하

71) 『김일성 저작집』 제10권에서도 출판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입니다.”; 이가영, 김정은 정권의 정책 정당화 수단 연구, 북한연구학회보(제22권 제2호), 2018, 12. 31쪽.

72) 연합뉴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부동산 사용료 개선 필요성 지적”, 2013. 5. 9.

73) 예컨대 박학수, 주체의 토지법전을 마련하시어 사회주의국토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제64권 제3호), 2018, 97쪽 이하.

74) 양문수, 앞의,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8쪽 참조.

75) 한철룡,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이론실천적문제, 김일성대학학보(역사,법률)(제64권 제1호), 2018, 99-100쪽.

76) 김명옥, 결혼과 가정에서 여성인권보장과 공화국사회주의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률)(제63권 제3호), 2017, 96쪽.

여 룡락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마치 북한에서만 자유결혼을 보장하는 듯한 기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발표에 대하여는, 결혼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를 할 만한 사회적 요구가 2017년 현시점에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북한문헌의 행간을 읽어 내는 수고를 필요로 한다. 북한문헌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논문의 구체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논문이 발표되는 정치·사회적 배경 내지 시대적 상황을 꿰뚫어 보는 안목도 필요해 보인다.

3.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합리화 수단

북한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북한민법 제3조), 계획적인 재산거래의 원칙(북한민법 제4조) 등을 규정한 민법 체계와는 달리 초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⁷⁷⁾ 이러한 변화가 북한 민법의 이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래 북한민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물적재산권, 전당계약, 담보권 등에 대한 북한논문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요소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합리화 하려는 변화의 시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뿌리를 둔 외국 민사제도의 소개는 북한민사법의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4. 제도와 현실 괴리의 합리화 도구

북한에서 토지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소유로 매매할 수 없고, 건물도 원칙적으로 매매가 금지되고 있어 토지나 건물을 팔고 사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이 필요치 않았다.⁷⁸⁾ 그런데 2004년 “내각 상무조의 가격관리체계 개혁안” 제3호에서 ‘주택, 려관 등 부동산가격을 현실적으로 재평가’⁷⁹⁾하도록 함으로서 사용료 제정을 위한 기초로서 부동산가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후 북한당국은 2009년 ‘북한도시경영법’과 많은 부분 중복되고 있는 ‘북한살림집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⁸⁰⁾ 다른 한편 북한당국은 2009년 11월

77) 이은정,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 민사법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연구(제20호), 2018, 374쪽.

78) 리동구,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 경제연구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2006, 31쪽.

79)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84쪽 이하.

80) 자세한 것은, 이은정, “북한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20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부동산의 국정가격에 대한 최초의 법률인 ‘북한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여 살림집 등 부동산사용료의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⁸¹⁾ 그리고 부동산사용료는 부동산가격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부동산의 국정가격 산정은 부동산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⁸²⁾ 사정이 이러한데도 북한의 학자들은 “부동산사용료는 자본주의 사회의 세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²⁷⁾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사용료에 대해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개인이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한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돈”이며 “국가 예산수입의 보충적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사용료 납부는 국민의 응당한 의무”²⁸⁾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부동산 사용료는 ‘세금’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 세금과 전혀 다르지 않다.⁸³⁾ 이러한 현실을 호도하기 위하여 북한학자들은, 2006년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⁸⁴⁾를 비롯하여 2010년 “부동산관리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⁸⁵⁾, “고정재산의 재생산을 위한 자금수요와 원천의 맞물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⁸⁶⁾, 2013년 “부동산사용료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⁸⁷⁾, 2014년 “부동산사용료계산의 과학성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⁸⁸⁾ 등을 통하여 부동산사용료에 세금이라는 의식을 철저히 배격하기 위한 선전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제한적이거나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될 사회주의적 제도와 시장경제적 제도의 괴리는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북한민법 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합리화할지 지켜볼 일이다.

349쪽 이하 참조.

- 81) 문홍안, 북한 살림집법 관련 법제를 통해 본 북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북한법연구(제18호), 2018, 129-130쪽.
- 82) 공민달,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86-87쪽.
- 83) 양문수, 앞의,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17-18쪽.
- 84) 리동구,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 29쪽 이하.
- 85) 최성현, “부동산관리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10년 제1호, 42쪽 이하.
- 86) 류영철, “고정재산의 재생산을 위한 자금수요와 원천의 맞물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2010, 제4호, 91쪽 이하.
- 87) 허진욱, “부동산사용료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2013, 제1호, 120쪽 이하.
- 88) 허철환, “부동산사용료계산의 과학성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2014. 제1호), 96쪽 이하.

V. 나가며

이 논문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발간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에 게재된 민사법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남한민법 체계에 따른 논문의 분류와 연도별, 발표자별로 나누어 북한민법 연구의 큰 흐름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논문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다루지 못했다. 각 분야의 개별적 논의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북한에서 22년 동안 발표된 북한민법 논문을 검토한 결과, 북한 민법연구에 있어서 논문형식과 그 내용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정치를 위한 선전도구로서의 기능은 줄어든 반면 최근에 이룰수록 법리적 접근을 도모한 논문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시각으로 보자면 법해설 정도 수준의 논문이 많고, 남한이나 서방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학술적 전문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논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2016년부터 논문에 실마리어(주제어)를 첨부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한다거나 그에 따른 각주, 한글초록, 영문초록 등은 앞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도 외국 민사법에 대한 연구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발표가 늘어나는 것은 논문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실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북한의 민법학계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학문의 보편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신호가 되길 기대한다.

남한에서는 ‘통일법연구학회’를 중심으로 북한법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고,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지원으로 북한민법주석, 북한가족법주석 등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한학자들은 북한주민들의 현실적 사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연구가 자칫 북한주민들의 개인생활과 유리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민법 학자들의 논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보다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문헌의 확보를 위한 도서관 등 기관 방문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예정하였던 연구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부족하나마 이 연구를 통해 파악된 북한민법 학자들의 현황과 관심 분야 및 연구의 흐름이, 향후 북한민법 논문의 개별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 단행본

- 김상용, “북한에서의 사회주의민사법의 발전과 전망”, 민사법연구(5), 법원사, 2004.
- 박정원, 북한법률용어의 분석(III) - 민사법 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7.
- 법무부, 『북한민법 주석』, 2014. 12.
- _____, 『북한가족법 주석』, 2015. 12.
- 장명봉 편,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3.
- 정경모 · 최달곤 편, 북한법령집(제4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 좋은 벗들 엮음,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정토출판, 2000.
-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 江平 外, 노정환 옮김, 중국민법,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7.

2. 국내 학술지

- 권은민, “북한자료를 통해 본 북한의 조세제도 인식 수준과 현실”, 북한법연구 제18권, 북한법연구회, 2018. 329-347쪽.
- 김근배,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 과학기술계 학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 지 제22권 제2호, 한국과학사학회, 2000, 192-216쪽.
- 김동한, “북한의 법학연구: 연구동향 및 특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06, 58-88쪽.
- _____, “북한의 남한 법·제도 및 국내정치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10, 29-58쪽.
- 김상용, 북한의 사회주의 민사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통일 한국민법 구상의 기본방향, 북한법연구 (제22호), 2019, 8쪽.
- 문흥안, “북한가족법제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 통합의 방향”, 법조 제64권 제11호, 통권 제710호, 법조협회, 2015, 5-84쪽.
- _____, “북한살림집법 관련 법제를 통해 본 북한 부동산시장의 변화”, 북한법연구 제18

- 권, 북한법연구회, 2018, 111-149쪽.
- 신효숙, “해방 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1998, 195-224쪽.
- 알렉 시글리, “김일성대학 류학생 교실의 일화들”, 북한 제580호, 북한연구소, 2020, 68-79쪽.
- 양문수,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연구 제12권 제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7-61쪽.
- 이가영, “김정은 정권의 정책 정당화 수단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2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8, 29-50쪽.
- 이은정, “북한살림집법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20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49-376쪽.
- _____,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 민사법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연구(제20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2018, 339-378쪽.
- 장명봉, “북한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법연구, (제5호), 북한법연구회, 2002, 223-299쪽.
- 장병일, “북한법상 점유의 법적 성격”, 통일과 법률, (통권 제44호), 법무부, 2020, 69-101쪽.
- 전미영, “북한의 철학연구 동향 및 특성 : 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23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199-241쪽.
- 최달곤, “북한민법의 제정과 그 변화 -비교분석적 연구를 중심으로-”,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92, 93-118쪽.
- 최선영, “북한의 교육제도: 변천사와 부문별 특징”, 통일경제, 3·4월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1, 69-77쪽.

3. 국내 학위논문

- 공민달,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4. 북한 단행본

「김일성저작선집」, 2권, 1968.

「김일성저작선집」, 3권, 1968.

「민법 1(심의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민사법사전」,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안전부출판사(평양), 1997.

「법학사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과학출판사, 19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 1956.

김창호, 조선교육사(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윤종철, 「민법학 2」(자체교재), 김일성대학출판사(평양), 1985.

5. 북한 학술지

강정철, “점유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2015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5, 54-55쪽.

_____, “민법상점유의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제64권 제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5, 108-111쪽.

김명옥, “결혼과 가정에서 여성인권보장과 공화국사회주의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제63권 제3호, 2017, 94-99쪽.

류영철, “고정재산의 재생산을 위한 자금수요와 원천의 맞물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56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91-94쪽.

리동구,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 경제연구, (2006년 제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29-32쪽.

리성, “민사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제64권 제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8, 135-137쪽.

리학철, “공화국민사시효제도의 목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제43권 제1호,

-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53-57쪽.
- 박학수, “주체의 토지법전을 마련하시어 사회주의국토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제64권 제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8, 97-100쪽.
- 최성혁, “부동산관리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010년 제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42-45쪽.
- 한철룡, “각국 민법이 규제하고 있는 점유의 효력”,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제61권 제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5, 89-93쪽.
- _____,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이론실천적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제64권 제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8, 99-103쪽.
- 허진욱, “부동산사용료의 적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59권 제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3, 120-123쪽.
- 허철환, “부동산사용료계산의 과학성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0권 제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96-99쪽.

[Abstract]

Study on North Korean Civil Law Reflected in North Korean Data

—Based on the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History, Law—*

Moon, Heung-Ahn**

Jo, Geun-Hyoung***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big flow of civil law studies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sis on civil law published in the Kim Il-Sung University Academic Journal (History, Law) published by Kim Il-Sung University from 1997 to 2018. Prior to thesis analysis, the study examined law education in Kim Il-Sung University and Law School, and the publication of Kim Il-Sung University Academic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ation of Kim Il-Sung University's academic journal in section II. In section III, 83 papers on civil law from the Kim Il-Sung University's academic journals published from 1997 to 2018 by North Korean law scholar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ystem of the South Korean Civil Law, to review the research trends by year, field, and presenter. In section IV,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examined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sections II and III, followed by section V with the summary of the above studie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apers on North Korean civil law published in North Korea for 22 years,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in format and content of the paper in the study of North Korean civil law. Since 2016 the volume and number of published paper have increased, so does the level of research level with foreign civil law being introduced. Additionally, it's been observed in those papers that there is an effort to consider a legal approach toward a political propaganda sphere.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2018.

** Lead Author, Professor,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 Corresponding Author, Specialis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Still, as a large portion of North Korean papers was at the level of merely providing legal interpretation on North Korean civil law, the level of academic expertise does not seem to bear that of South Korea. As for the format of the papers, the relevant key words have been added since 2016, but there still are rooms to improve for citing, adding footnotes and abstracts, etc. The fact that researches on foreign civil law started to appear in North Korea,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publications on them raises expectations not only for the format but also for the fidelity of the published papers.

[Key Words] Kim Il-Sung University, Kim Il-Sung University Academic Journal, North Korean Civil Law, Research Paper on North Korean Civil Law, Kim Il-Sung University School of Law